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고이자율 하향조정 등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78호)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최고이자율의 하향조정(안 제2조제1항)	3
2. 최고이자율 초과 시 약정 무효 등(안 제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조)	5
3. 최고이자율 초과 시 벌칙 상향 등(안 제8조)	8
IV . 관계기관 의견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24.
3. 회 부 일 : 2024. 7.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을 통하여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되,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하도록 하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고,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고 처벌이 미약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기존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며, 특히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원금을 상환한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
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및 제8조).

Ⅲ. 검토의견

1. 최고이자율의 하향조정(안 제2조제1항)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계약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법정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20%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u>25퍼센트</u>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 ----- <u>20퍼센트</u> ----- -----.

현행 법령상 최고이자율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연 20%로 규정¹⁾하고 있음.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은 시중금리 인하 등을 반영하여 2000년 이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어온 것으로 확인됨.

1)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출처: 연합뉴스, “법정최고금리 연 20%로 인하”, 2021.6.27.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과 같이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20%로 규정하고
 자 한 것이므로 동 법 개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법정 상한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최고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경제위
 기로 인한 금리 급등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정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이
 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최고이자율 초과 시 약정 무효 등(안 제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조)

현행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제3항),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려는 것(제4항)임.

또한, 현행은 초과지급한 이자로 원본이 소멸한 때 그 이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무효인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자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 채무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제5항),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무효인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따라 원본을 대차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제6항) 것임.

추가로, 개정안은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 약정에 대해서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게 되면 그 복리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려는 것(안 제5조)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u>25퍼센트</u>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 ----- <u>20퍼센트</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u>부분은</u> 무효로 한다.	③ ----- ----- <u>경우</u> <u>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u> ----- -----.
<u><신설></u>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이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u>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u>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u>초과 지급된</u>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인 약정에도 불구하고----- ----- <u>지급된</u> ----- -----.
<u><신설></u>	⑥ 채권자가 제4항에 의하여 무효인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따라 원본을 대차한 경우에는 그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생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u>부분에</u>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u><단서</u>	제5조(복리약정제한) ----- ----- ----- ----- <u>경우 그 복리약정 전부를</u> ----- ----- <u>다만,</u>

<u>신설></u>	<u>복리약정이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u>
---------------	---

개정안은 서민층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고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원본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쌍방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 위험과 불이익을 채권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무효인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따라 원본을 대차한 경우 그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대차원금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고 있음. 이는 개정안에 따라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금전대차약정이 전부 무효가 되면 원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가 대여 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즉시 반환의무가 발생하여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채권자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가능성 및 채무자의 악용 가능성²⁾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최고이자율 초과 시 벌칙 상향 등(안 제8조)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초과이자의 수준을 구분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벌칙) <신설>	제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② (생략)	2. 제2조제6항을 위반하여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자
	② 제2조제1항을 위반하여-----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2) (출처: 금융위) 예) “2천만원만 빌려주면 1년 뒤 3천만원을 갚겠다(이자율 50%)” 며 계약유도 후, “최고금리 2배 위반했으니 원금·이자 모두 갚지 않겠다.” 며 대출금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원금 반환 청구시 “최고금리 2배 위반하면서 원금 반환 청구했으니 가중처벌 대상으로, 감옥에 가기 싫으면 돈을 더 내놔야 한다.” 고 협박하여 피해구제도 사전에 차단하는 사기수법

개정안은 최고이자율 초과 시 벌칙을 강화하고 초과 이자율 수준에 따라 벌칙을 다르게 적용하여 채권자가 법을 위반하여 이자를 높게 징수하는 행태를 근절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와 그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형량이 다르게 되는데 최고이자율 2배 초과 이자를 수취한 자와 최고이자율 이자를 단순 초과 수취한 자 사이의 위법성의 차이가 질적으로 현저한 것인지 형평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컨대, 법정이자율 초과율은 높지만 초과이자 취득액 자체는 낮은 경우와 이자초과율은 낮지만 초과이자 취득액이 큰 경우를 비교할 때 전자의 불법성이 더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IV.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고금리 금전대차계약에 대한 제재를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최고이자율을 과도하게 낮출 경우 불법 사금융을 확대시킬 위험이 존재하고 적정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최고이자율 위반 시 이자약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과도한 사적자치 침해의 소지가 있고, 최고이자율 2배 초과시 계약을 전부 무효로 하고 원본반환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으며 사인간의 금전거래 자체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뿐만 아니라 원본반환의무가 부정되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법리와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을 하향하는 경우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인한 금리 급등 등의 상황 발생 시 금리조정과 같은 필요조치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저신용·취약계층에 대한 개인대출 등 신용공급이 급격하게 축소되어 서민층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우려가 있고, 최고금리 위반 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원금·이자까지 무효화하는 경우 부당이득 관련 민사상 일반원리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54